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 하 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 1) 계약 당사자
 - 2) 계약기간
 -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 한다. <신설 2019.6.12.>
5.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 장기요양 이 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설 2019.6.12.>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 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00.00>

제3조 (계약의 해제)

1.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한다.
2.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2) 입소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4) 입소자가 중대한 고의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5)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때
 - 6) 어르신 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또는 비품, 집기 등의 오염과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정다운요양원

1. 입소자가 부담하여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입소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의료급여 수요자
시설급여	20%	12%	8%	면제(무료)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4,590	69,210	63,800
월입소비용(30일)	2,237,700	2,076,300	1,914,000
월입소비용(31일)	2,312,290	2,145,510	1,977,800

(1개월 30일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일반	447,540	415,260	382,800
경감(40%)	268,524	249,156	229,680
경감(60%)	179,016	166,104	153,120

비급여 항목내역

1. 식재료비 : 1일 3식=10,500원 (식사1회 당 3,800원)
2. 간 식 비 : 1일 1,000원

제6조 (입소보증금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바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1) 입소자의 장기 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2)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sns)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SNS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을 작성한다.

제7조 (이용료 납부)

1. 입소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일 전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입소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